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 사 경 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69호)	김태년의원	2024. 8. 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 심사·의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662호)	정부	2025. 9. 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 심사·의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770호)	김영환의원	2025.10.2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 심사·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안 제1조제2항)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

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50%로 적용하고,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 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의3제3항)

폐기 담배를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시켜 폐기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의3제3항제2호 중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를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 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9.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삭 제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단서 신설> 가. ~ 다. (생 략) ③ ~ ⑫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6. ----------.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2. ----------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